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삼성SDI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의 정관 제26조의3 및 이사회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경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5.>

제 2 조 (적용범위)

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른다. <개정 2002. 3. 25.>

제 3 조 (권한 및 기능)

- ① 경영위원회는 정관, 이사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 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② 경영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에 관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경영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2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 5 조 (위원장)

- ①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위원장은 경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3. 25.>

제 6 조 (경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의 출석 등)

경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 (개 최)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 또는 위원회 부의 안건에 부합되는 사안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3. 3. 15.>

제 8 조 (경영위원회의 소집)

- ① 경영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24시간 전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 ② 경영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 ①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위원회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경영위원회에 직접 출석 한 것으 로 하여 경영위원회를 진행하고,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 ② 경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통지의무)

경영위원회는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결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02. 3. 25.>

제 11 조 (긴급사항)

- ①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경영위원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 경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먼저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5.>
- ② 전항의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경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 3. 25.>

제 4 장 부의사항

제 12 조 (부의사항)

① 경영위원회 부의할 사항은 이사회가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경영일반등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

나. 주요 사업계획 및 경영전략 <개정 2002. 3. 25.>

다.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협력 추진

라. 임직원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기본 원칙의 결정 및 변경

마. 기타 주요 경영 현안

2. 재무에 관한 사항

가. 건별 자본금 1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개정 2002. 3. 25.>

나. 건별 자본금 5% 이상의 타법인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개정 2002. 3. 25.>

다. 건별 자본금의 5% 이상의 해외 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단, 기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기간연장 또는 갹신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02. 3. 25.>

라.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5%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개정 2002. 3. 25.>

마. 건별 자본금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보증
(단, 기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기간연장 또는 갹신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02. 3. 25.>

바.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의 상장

사. 유상증자 시 실권주 처리

아. 건별 자본금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단, 종업원 및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여는
제외) <개정 2002. 3. 25.>

자. 건별 자본금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 <개정 2002. 3. 25.>

차. 건별로 자기자본의 25% 이상 차입계약 체결 <개정 2002. 3. 25.>

3. 기타 경영사항

가. 지점, 공장, 사무소, 해외 법인, 해외 지점, 해외 사무소 등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나.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경영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5 장 위 임

제 13 조 (위 임)

경영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법령, 정관,
본 규정 및 이사회 규정 등에 의하여 별도로 결의할 기관을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사회 및 본 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세부 사항의 결정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그 결정을
하도록 위임한다. <개정 2002. 3. 25.>

제6장 기 타 사 항

제 14 조 (의사록)

- ① 경영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경영위원회의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및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간 사)

간사는 경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며, 필요할 경우 의장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6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 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기 1998년 4월 30일 제정

서기 1999년 4월 14일 개정

서기 2000년 3월 16일 개정

서기 2002년 3월 25일 개정

서기 2013년 3월 15일 개정